
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 동향

[2023년 3분기]

본 자료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국내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작성한 보고서이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종합상담실 환경부 파견관(02-3497-1738)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I. 주요 정책	1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7.31~40일간)	1
2. 바이바이플라스틱(Bye Bye Plastic) 실천 캠페인	5
3. 녹색산업 성장거점,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공개	8
4. 2022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공개	13
II. 규제개선 추진동향	15
1. 폐기물 처분 부담금 경감 추진	15
2. 환경영향평가,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	16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개선, 민·관·학 함께 추진	17
4.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최초검사 시기 변경 입법예고	18
III. 탄소중립 이행 등 산업계 지원	18
1. “환경정보 공개”제도 개편 추진	18
2. 녹색새싹기업 발굴! 2023환경창업대전(8.30)	23
IV.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 대응	27
1.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8.28~9.1)	27
2.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실천 선언식 개최(8.30)	29

I. 주요 정책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7.31)

- ▶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고, 환경부문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 순환경제 신산업·신기술 혁신을 촉진

□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내용 확인 가능

□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하여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환경부는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 시장 개척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그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아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고시제도를 신설한다.

-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을 지정·고시하고,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판매·사용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붙임1

전문용어 설명

구분	용어	법적 정의	예시
1	순환원료	·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4호)	·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원료, 부산물 등
2	순환자원	· 폐기물 중 낮은 인체·환경 유해성 및 높은 경제성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으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5호)	· 폐지, 고철 등
3	재활용가능자원	·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 단,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폐페트, 페스티로폼, 폐가전 등
4	재생원료	·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의2호)	· 페트펠릿, 페트칩 등

□ 순환원료 정의 및 사용 촉진(시행령 제2조, 제7조)

- (정의) 원형 그대로 혹은 가공을 거쳐서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 순환 자원, 재생원료, 중고물품, 순환골재,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자원, 유기성 폐 자원, 부산물 및 산업활동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기체상태 물질 명시
- (촉진)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설·자금·제품 설계·시장 개척 및 수출 등의 지원, 전문기관·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사업자 지원, 순환 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지원 등 촉진사업 명시

□ 순환이용 유형(시행규칙 제2조)

-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수집·운반, 분리·선별, 파쇄·압축·절단, 재사용 유형에 재제조, 기체 포집·저장, 대여·공유 활동 추가

□ 순환이용성 평가 개선(시행령 제8조~제10조, 시행규칙 제11조)

- 순환이용성 평가 계획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 선정기준에 출고·수입량 또는 생산·판매량 기준 추가

□ 순환자원 활성화 (시행령 제11조~제21조, 시행규칙 제12조~제19조)

- 유해성 低·경제성 高 등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의 경우, 개별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환경부 일괄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 면제
- 품질인증 받은 순환자원을 원료의 중량기준 100분의 10이상 사용할 경우,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관련 정보를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순환 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 시행
- 재활용 실적이 3년 미만인 신기술 활용 사례의 경우에도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완화

-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표지인증제’를 ‘품질인증제’로 개편*하여, 순환자원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촉진

* (현행)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정보 표시계획 중심 검토·인증

(개정) ①이물질 함유량, ②유해물질 함유량, ③지속적인 품질유지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인증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시행령 제22조~제32조, 시행규칙 제20조~제27조)

- (심의위원회) 규제특례·임시허가 가능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의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 (구성) 20명 이내,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의결)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규제확인)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련 허가 등의 필요여부 확인을 위한 신속·일괄처리 신청서 및 결과통보서 등 규정

- (실증특례·임시허가)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 실증특례를 받고,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및 사업실시계획서 등 규정

- (책임보험)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 관련 기간, 보상액 및 지원사항 등* 명시

* (기간) 규제특례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 (보상액 기준) 사망 1.5억/인, 부상 0.3억/인 등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비용 일부 지원 가능

- (과태료) 규제샌드박스 관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등 1,0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

* 위반기간 1개월 미만 300만원, 1~3개월 500만원, 3~6개월 700만원, 6개월 이상 1,000만원

- ▶ 환경부 장관을 첫 주자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10가지 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바이바이플라스틱(Bye Bye Plastic) 실천 캠페인 추진!(8월16일~)

가.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 환경부는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던 데 이어, 8월 16일부터 범국민 대상으로 바이바이 플라스틱 (Bye Bye Plastic) 실천 운동을 추진 중이다.

*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을 촉구하는 캠페인

- 이번 실천 운동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 이에, 8월16일 환경부 장관은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10가지 생활습관 중 하나인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를 강조하고자 다회용기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유주방 플랫폼을 방문했다.

- 그리고, 플랫폼 관계자, 입점매장,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업체 관계자와 다회용기 사용소감,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또한, 방문 시각에 맞춰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다회용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게재했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했다.

* 유튜브(youtube.com/@mevpr), 인스타그램(instagram.com/ministry_environment), 페이스북(facebook.com/mevpr) ** 페이스북(facebook.com/ministerhhj)

붙임 1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운동 개요

☐ 추진목적

- 범국민적 실천운동을 통해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생활문화 확산

☐ 캠페인명

-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일명 ‘BBP 챌린지’)

☐ 참여대상

-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참여방법

- ‘안녕(Bye)’이라는 의미로 양손을 흔드는 동작을 사진촬영하거나 동작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줄이기를 실천하겠다는 내용의 영상 촬영
- 사진 또는 영상,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

* #환경부, #바이바이플라스틱 #BBP

지구를 위한 10가지 습관 오늘 실천 완료!

Bye Bye Plastic



 1 장 볼 때 장바구니 사용하기	 6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2 신선식품 주문할 때 다회용 보냉백 사용하기	 7 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3 물리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8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9 포장지 많은 제품 사지 않기	 10 포장 없는 리필 가게 사용하기
 5 중고제품이나 재활용제품 이용하기	 10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

 환경부

- ▶ 지역별 환경산업과 기반시설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5년단위 법정계획) 수립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인천)를 중심으로 5개 클러스터 조성 추진 중

- 환경부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경제분과)*의 심의(6월 27일)를 거쳐 '제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6월30일 공개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 산하 법정 위원회로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 이번 기본계획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환경산업과 기반시설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환경부는 이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 및 연관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실증처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클러스터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 또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여 권역 및 지역별 간 연계를 강화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녹색산업 성장 거점화를 추진하게 된다.

- 환경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녹색융합클러스터별로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클러스터 조성·운영 계획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제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I. 계획의 개요

□ 수립 목적 및 수립 근거

- **(수립목적)**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촉진 등을 지원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가이드라인 제시
- **(법적근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 *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계획기간·범위 : 2023년~2027년(5년)

- **계획 수립의 범위**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중인 클러스터* 등 「녹색융합클러스터법」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Post-플라스틱, 청정대기, 생물소재

□ 추진 경위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21.6)·시행('21.12)
-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22.5)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서면 '22.10~11월, 현장 '23.3월)
- 기본계획(안) 마련 및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23.5~6)
- 중앙환경정책협의회 심의('23.6.27)

□ 주요내용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녹색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에 관한 사항
-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역과 조성의 기본원칙 및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녹색융합클러스터 개념 〉

□ 정의

- (녹색융합클러스터)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 촉진, 연구개발 및 실증화 지원, 첨단기술 창출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법 제2조)

※ 융복합은 분야별 녹색산업간 융복합 또는 소·부장 등 산업내 가치사슬에 따른 융복합, 유통·금융·서비스 등 연계산업과의 융복합을 의미

- (녹색산업)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산업(「탄소중립법」 제2조)
 -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폐기물에너지·수열에너지 관련 산업, 수소·암모니아·바이오가스 관련 산업, 온실가스 처리·이용 산업 등(시행령 제2조)
- (녹색연관산업) 녹색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법 제2조)
 -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시행령 제2조)

□ 구성요소

	시설	녹색융합클러스터	기관	
■ 연구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연구개발	육성 분야* 녹색 혁신 산업 + 융복합 연관 산업	전문운영기관	■ 클러스터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 전문인력 양성, 창업, 시장 진출 지원 시설	진흥시설		입주기업	■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를 완료한 기업
■ Test-bed, Pilot Plant 등 기술 실증화 시설	실증화시설		전문연구기관	■ 연구개발·사업화 촉진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
■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집적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 전문적 기술·지식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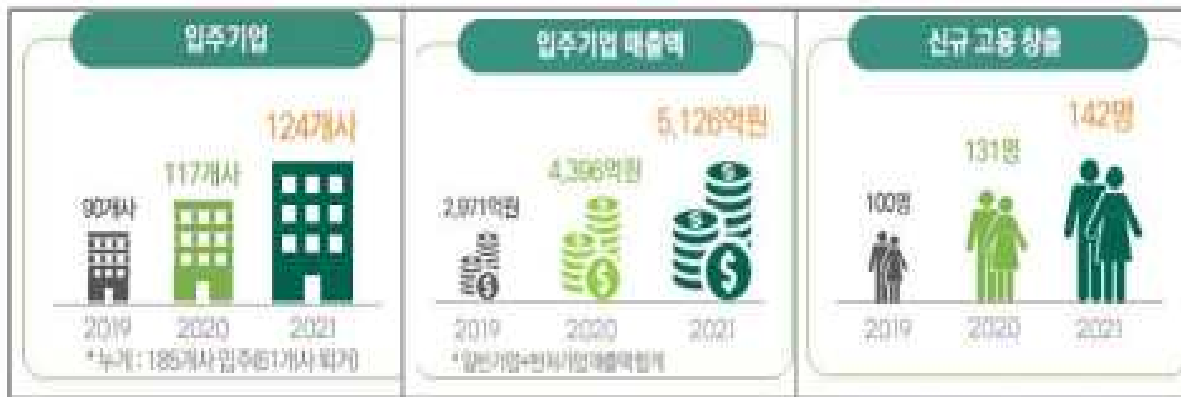
* 자원순환(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Post-플라스틱, 태양광 폐패널 등), 바이오가스, 청정대기 등

□ 지정요건(법 제10조·시행령 제6조)

- ①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과 부합성
- ② 녹색산업등 집적·융복합 효과 및 연구개발, 실증화, 사업화 등의 연계지원 효과성
- ③ 녹색융합클러스터 필요시설의 확보 가능성
- ④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발전 기여도
- ⑤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 ⑥ 관할 시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연관성 등

○ **녹색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창업·벤처 녹색 융합클러스터’ 조성·운영** (舊 환경산업연구단지, '17~)

※ 환경산업 실증·연구 지원을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가 녹색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로 개편('22.12~)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5개 클러스터* 조성 추진 중** ('20~)

구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Post-플라스틱	청정대기	생물소재
조성도				
광역	경북 포항	부산 강서구	광주 광산구	인천 서구
상세지역	블루벨리·영일만산단	국제물류산단	빛그린산단	창업벤처 클러스터내
착공	'23.7(예정)	'24(잠정)	'25(잠정)	'24(잠정)
준공	'25(예정)	'25(잠정)	'26(잠정)	'26(잠정)
총사업비	489억	463억(조정예상)	493억(조정예상)	300억

*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이 아닌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추진

<클러스터별 유치대상 기업·기관 예시>

구분	유치 대상
창업·벤처	■ 환경창업대전 및 타 창업대전 우수 수상 기업, 엔젤투자사 추천 기업 등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운송, 전처리, 재사용·재이용 관련 기업
Post-플라스틱	■ 플라스틱 수집·선별 기업 및 순환자원 생산·유통 관련 기업
청정대기	■ 수송 분야 또는 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관리 업체
생물소재	■ 미생물 배양체를 활용한 생물소재 업체

□ **주요내용**

- 지역의 산업현황과 연계한 **녹색혁신산업 선정 및 육성 계획**, R&D·실증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확보 계획** 등을 포함하여 마련

<조성계획 주요내용>

항 목	주요 내용
기본사항	· 녹색융합클러스터 명칭, 위치 및 면적 ·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조성 필요성 및 효과* · 사업 타당성(비용, 편익, 시장 규모 예측치 등) 분석 포함 ·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계획(전문운영기관 지정 방안 포함)
녹색혁신산업	·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녹색혁신산업 육성 계획 · 지역 산업·경제 기여 방안
기반시설	· R&D, 인증·실증, 기업지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부지·시설 현황 또는 설치·확보 계획
전문연구기관	· 산·학 협력이 가능한 전문연구기관 현황 및 지정·지원 계획
전문인력 양성기관	· 교육과정·시설 및 교수 현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계획
입주기업	· 입주기업 유치계획 · 지자체 지원 사업과 연계 지원 계획
재원조달	· 총사업비, 조성계획 추진내역별 소요예산 및 예산별 재원조달 방안

□ **추진절차** :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9조

- 녹색융합클러스터별 **조성계획 마련**(환경부)
- **관할 시·도지사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환경부)
 - ※ 필요시 주민, 관계 전문가·기관의 의견수렴 가능(「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5조)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확정**(환경부)
-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및 고시**(환경부)
 - ※ 지정 이후 즉시 관할 시·도지사 통보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2022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및 배출량 추이, 문별 배출량 등을 포함한 중간 집계결과(최종집계는 24년 말 예상) 공개

-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내년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확정에 앞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5,450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의 효과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2.6%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배출량은 오히려 3.5% 감소한 것이다.
- * 2022년 실질 국내총생산 1,968.8조원, 2021년 실질 국내총생산 1,918.7조원(한국은행)
-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배출 정점인 2018년의 7억 2,700만톤보다 10% 감소한 수치이며,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원단위)’도 전년보다 5.9% 감소한 332톤/10억원으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문별 배출량 변화를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 970만톤, 산업 부문에서 1,630만톤, 수송 부문에서 80만톤, 폐기물 부문에서 10만톤이 각각 감소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140만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30만톤이 각각 증가했다.
- ‘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는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최근 5년간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
2. 2022년 잠정배출량 부문별 증감.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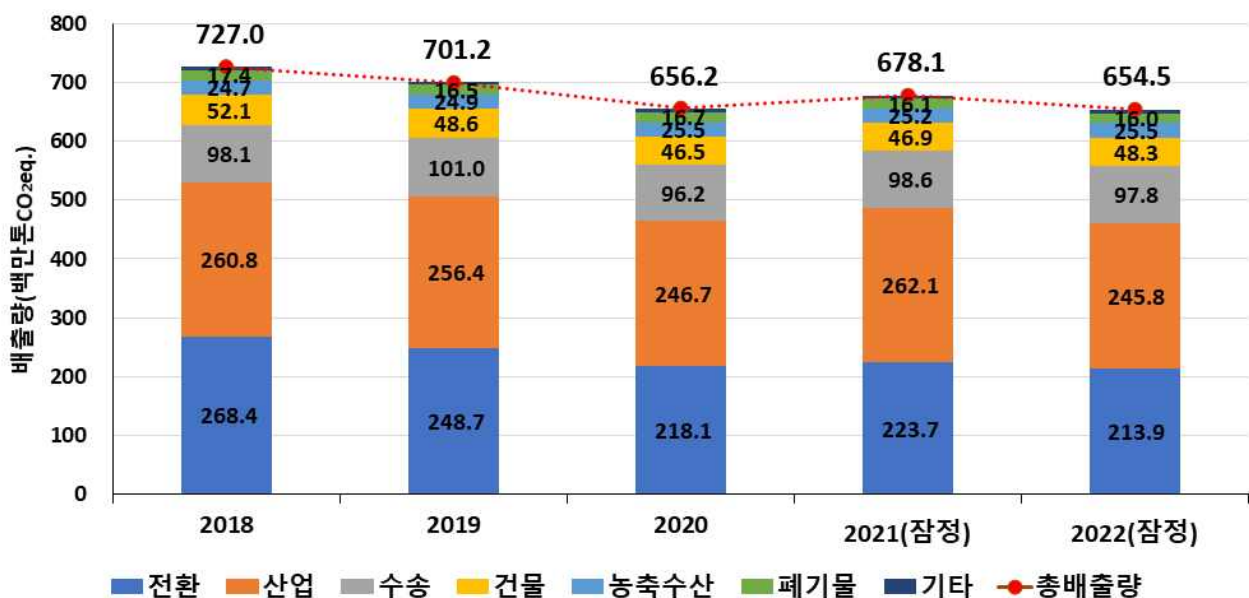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단위 : 백만톤 CO₂eq, %, 천억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잠정)	'22년(잠정)*
총배출량 (증감률)	727.0 -	701.2 (-3.5%)	656.2 (-6.4%)	678.1 (3.3%)	654.5 (-3.5%)
GDP (증감률)	18,120 -	18,527 (2.2%)	18,395 (-0.7%)	19,187 (4.3%)	19,688 (2.6%)
전환	268.4 -	248.7 (-7.3%)	218.1 (-12.3%)	223.7 (2.6%)	213.9 (-4.3%)
산업	260.8 -	256.4 (-1.7%)	246.7 (-3.8%)	262.1 (6.3%)	245.8 (-6.2%)
수송	98.1 -	101.0 (2.9%)	96.2 (-4.8%)	98.6 (2.6%)	97.8 (-0.8%)
건물	52.1 -	48.6 (-6.8%)	46.5 (-4.3%)	46.9 (0.8%)	48.3 (3.0%)
농축수산	24.7 -	24.9 (1.1%)	25.5 (2.1%)	25.2 (-0.9%)	25.5 (1.0%)
폐기물	17.4 -	16.5 (-5.2%)	16.7 (1.3%)	16.1 (-3.7%)	16.0 (-0.6%)
기타	5.5 -	5.0 (-9.1%)	6.6 (32.0%)	5.5 (-17.0%)	7.1 (29.1%)

* 잠정치는 유관지표를 활용하여 추계한 수치로 향후 확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추이('18년~'22년)



Ⅱ. 규제개선 추진동향

1

폐기물처분 부담금 경감 추진

-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부담금 제도개선방안(5.17, 비상경제장관조정회의) 후속조치가 심의의결되었다.
- 이에, 환경부는 연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현행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미만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약 6천3백 소기업이 받던 감면혜택이 중기업을 포함한 약 8천9백개소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1

부담금 운영심의 위원회 의결 안건(일부 발췌)

①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안 [환경부]

- (개요)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매립하는 자(지자체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의결내용) ①중소기업 감면대상 확대(연매출액 120→600억원), ②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부과요율(25원/kg)을 생활폐기물 수준(15원/kg)으로 인하, ③소각열에너지 회수율 감면기준 하향(50→30%)

* 사업장 내 사업 활동 외에 직원 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기대효과) 기존 소기업에서 중기업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각업체의 열회수 중대 설비투자 유인 제공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120억원 ↓, 6,329개) → 중기업(600억원 ↓, 8,952개)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연내 개정

- 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제7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 보다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1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로 개선(3건)

(안건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국토환경정책과)

개선 前	개선 後
○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판단이 <u>최초 승인된 사업면적(기 승인 면적)</u> 에 따라 대상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	○ 기 승인면적의 범위를 <u>여러번의 추가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을 초과하기 직전 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 제고</u>

(안건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국토환경정책과)

개선 前	개선 後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만 주민 등 의견수렴·변경협의·재협의 대상여부를 <u>영향지역 최소 지역범위* 외에서 증가하는 규모로 판단</u>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로, 철도 건설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u>영향지역 최소 지역범위 외에서 증가하는 규모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형평성 제고</u>

(안건3)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허가 규정의 적극 해석(생물다양성과)

개선 前	개선 後
○ 공익사업 추진 시 개발행위 허가 이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허가로 인하여 야생생물의 포획·이주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추진 지연 및 사업자와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 발생	○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u>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 되기 전에도</u>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u>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 가능</u>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을 위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와 함께 ‘취급시설기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8.18)했다.
 - 이를 위해 안전원은 7월 초부터 취급시설 검사기관, 학계, 산업계 및 시민사회로부터 이번 전문가 협의체 참여 인사 10명을 추천받았으며, 협의체는 이들 전문가를 포함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담당자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 전문가 협의체는 2024년 말까지 운영되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수준을 고려한 취급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논의를 진행한다. 발족식에 이은 첫 토론에서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및 취급시설기준 개편 방향’과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환경부 고시) 15종
- 화학물질안전원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제조·사용·저장 시설의 기준 고시(안)를 마련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현장 적용성 검토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2024년 12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붙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 15종

- | | |
|----------------------------|--------------------------------|
|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 -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 |
|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
| -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 -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
| -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 -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
| -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 -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
|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 | -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
|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 | |
| -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 | |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첫 정밀검사시기 변경 입법예고 [현행 출고 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 입법예고]

□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 15인승 이하면서 4.7*1.7*2.0m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하기 위함이다.

□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 국조실(규제심판부)로 건의된 “자동차 검사주기 완화”에 대해 국민안전·대기환경 영향 최소화 범위 내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차종 검사주기 개선 권고 (’23.2.15)

□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7만 674대(2023년 4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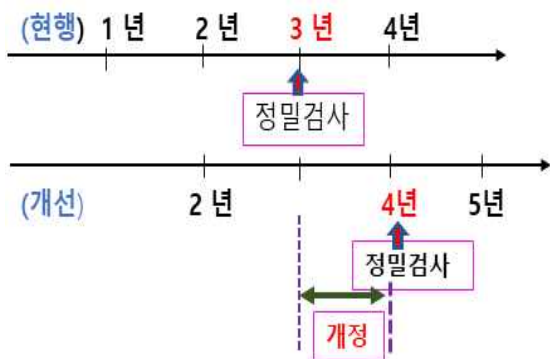
□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 1톤 화물차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사업용의 경우 93.9km, 비사업용의 경우 38.3km (2021년 기준)

<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 >

- 경·소형 승합·화물자동차(사업용 화물차 제외)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을 차령 3년 → 4년 경과 이후로 변경(별표 25)

최초 검사 이후 검사주기	현행	개정안
국토부(정기검사)	1년-1년-이후 매 1년	2년-2년-이후 매 1년
환경부(정밀검사)	차령 3년이 경과된 자동차 매 1년	차령 4년이 경과된 자동차 매 1년



< 적용 예시: '23년 출고차량 >

(현행) 국토부 '24년부터 매년 검사, 환경부 26년 검사

☞ 검사 시기 일치

(개정) 국토부 '25년, '27년(4년 경과) 정기검사

환경부 미개정시 26년(3년 경과) 정밀검사

☞ 4년 경과 후('27년)로 검사시기 일치 필요

Ⅲ. 탄소중립 이행업체 등 산업계 지원

1

“환경정보 공개” 제도 개편 추진

- ▶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국내.외 EGS공시의무화에 대비, 연내 개편안 마련을 위해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착수

□ 환경부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여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 ‘환경정보공개 제도’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하여 녹색경영을 유도한다.

※ 1,824개 기업(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 정보공개(‘22년)

□ 이번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은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에서 올해 6월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추진하려는 것이다. 또한 생물다양성 등 환경 정보 분야의 공시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경정보 측정·관리에 관한 기업 역량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부분도 고려되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대 흐름에 맞는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정착을 위해 8월 10일부터 금융기관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평가기관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기업과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려 한다.

붙임 1 환경정보공개제도 개요.

2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기후공시 주요내용 끝.

○ (목적) 환경정보공개를 통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녹색경영 유도

※ 추진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 제16조의9, 제31조제4항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 (대상)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등 1,824개 기업·기관('22년 기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 기존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 → ('22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추가

○ (항목) 업종에 따라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며 유형별 19개~27개 항목*으로 구성

* 기업개요, 녹색경영체계, 자원·에너지 사용량,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의무/자율 구분)

< 정보공개 6개 유형 구분 >

유형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항목 (개)	총 27 의무13, 자율14	총 19 의무8, 자율11	총 19 의무6, 자율13	총 19 의무7, 자율12	총 19 의무6, 자율13	총 27 의무13, 자율14

○ (절차) 대상기업 공고(환경부, ~4.30) → 정보 등록(기업·기관, ~6.30)
→ 검증(기술원, 7~12월) → 대 국민 공개(환경부, ~12.31)



붙임 2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기후공시 주요내용

- (목적)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활용
- (적용범위)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전환 위험 등 기업이 노출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 (보고기업/시기) 재무제표 기업범위 및 보고시기와 동일성 요구
- (시행일) '24.1.1.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
- (핵심요소)

구분	주요 내용
지배구조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이사회, 위원회 등) 및 경영진의 역할
전략	-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는 기업의 전략 * 기업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및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등
위험관리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과정
지표 및 목표	(산업공통 지표)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3), 내부 탄소가격¹⁾, 전환/물리적 위험²⁾, 기후 관련 기회³⁾, 자본배치⁴⁾, 보상⁵⁾ (산업기반 지표) 공시 지표 결정 시, 'S2 산업특화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68개 산업 지표를 참조 가능 (목표) 기업이 설정한 기후관련 질적·양적 목표와 목표 검토 * 법률에 기반한 목표(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포함), 목표를 설정·검토하기 위한 방법과 제3자 검증 여부 등

- 1) 기업의 내부적 의사결정 시 고려하는 온실가스 배출 톤당 가격
- 2) 기후 관련 위험에 취약한 기업의 활동/자산의 금액 및 비율
- 3)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기업의 활동/자산의 금액 및 비율
- 4)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배정된 자본지출, 자본조달 및 투자금액
- 5) 기후 관련 사항에 대한 경영진에 제공되는 보상 및 산정방식

- ▶ 녹색산업 유망 창업 아이템 발굴·지원을 위한 '2023 환경창업대전' 개최(8.30.), 수상팀에 총1억9백만원 상금 및 상장 수여, 대한민국 창업대전 본선 진출/창업벤처 클러스터(인천) 입주시 가점/투자유치 설명회 참여 기회 제공 등 후속 지원

□ 환경부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녹색산업 유망 창업 아이템 발굴·지원을 위한 '2023 환경창업대전' 최종 경연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 올해 환경창업대전에는 총 268개팀이 응모했고, 이 중 153개팀(57%)의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으로 나타나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함

□ 창업대전에 응모한 268개팀은 기술성, 혁신성, 시장성, 성장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25개팀이 최종 선발되었고, 총 1억 800만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 아울러, 최종 25개 수상팀에게는 후속 지원사업으로 1대1 전문가 상담(멘토링), 투자유치 설명회 참여기회 제공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이 중 상위 16개팀은 정부통합 공모전인 '도전! 케이(K)-스타트업(9월 예정)'에 도전할 기회도 얻는다.

□ 이날 환경창업대전 최종경연에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8개팀이 100여명의 국민참여평가단과 6명의 전문심사위원에게 발표 경연을 펼쳐 대상, 최우수상 등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 유튜브 '창업지구' 실시간 중계 병행(https://youtube.com/live/lZnuh_GYe4Y?feature=share)

□ 한편, 환경부의 환경창업대전은 유망녹색 창업기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 2022년도 '도전! 케이(K)-스타트업'에서는 환경창업대전을 통해 진출한 (주)엘디카본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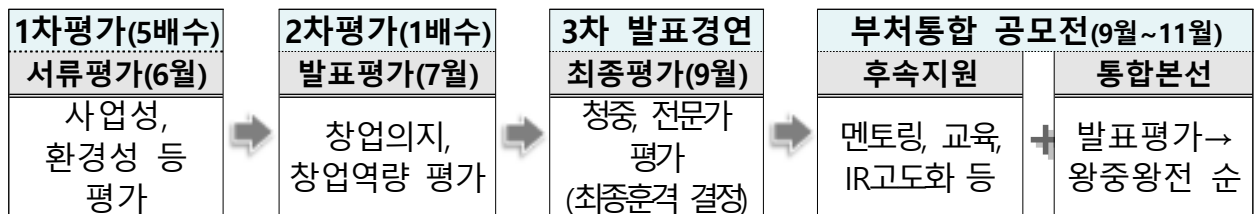
□ 개요

- (목적) 대국민 참여형 공모를 통해 녹색분야 유망 창업 아이템을 발굴·지원하여 환경창업 저변 확대 및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운영기간) '23. 3. ~ '23. 11.(약 9개월)
※ 모집·홍보 : 3~5월(7주), 평가 및 선발(~8월), 시상식(9월), 정부통합공모 및 후속지원(9월~11월)
- (주최/주관)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공모부문) ① 환경창업 아이디어 ② 환경창업 스타기업

공모부문	내용	참가자격
아이디어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창업 아이디어	예비창업자
스타기업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환경창업기업	업력 7년 미만 창업자

□ 평가 및 방법

- (평가절차) 1차 서류, 2차 발표, 3차 발표경연 순



○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발인원의 5배수 선정 (아이디어 60, 스타기업 65)
- (2차 발표평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수상팀 최종 선정(아이디어 12, 스타기업 13)
- (3차 발표경연) 2차 평가점수와 발표경연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훈격 결정
 - 2차 평가결과 상위순위 총 8개 팀(아이디어4, 스타기업4)은 2차 평가 점수(50%)와 국민평가단(20%) 및 전문가(30%)의 현장평가 점수 합산

□ 시상 및 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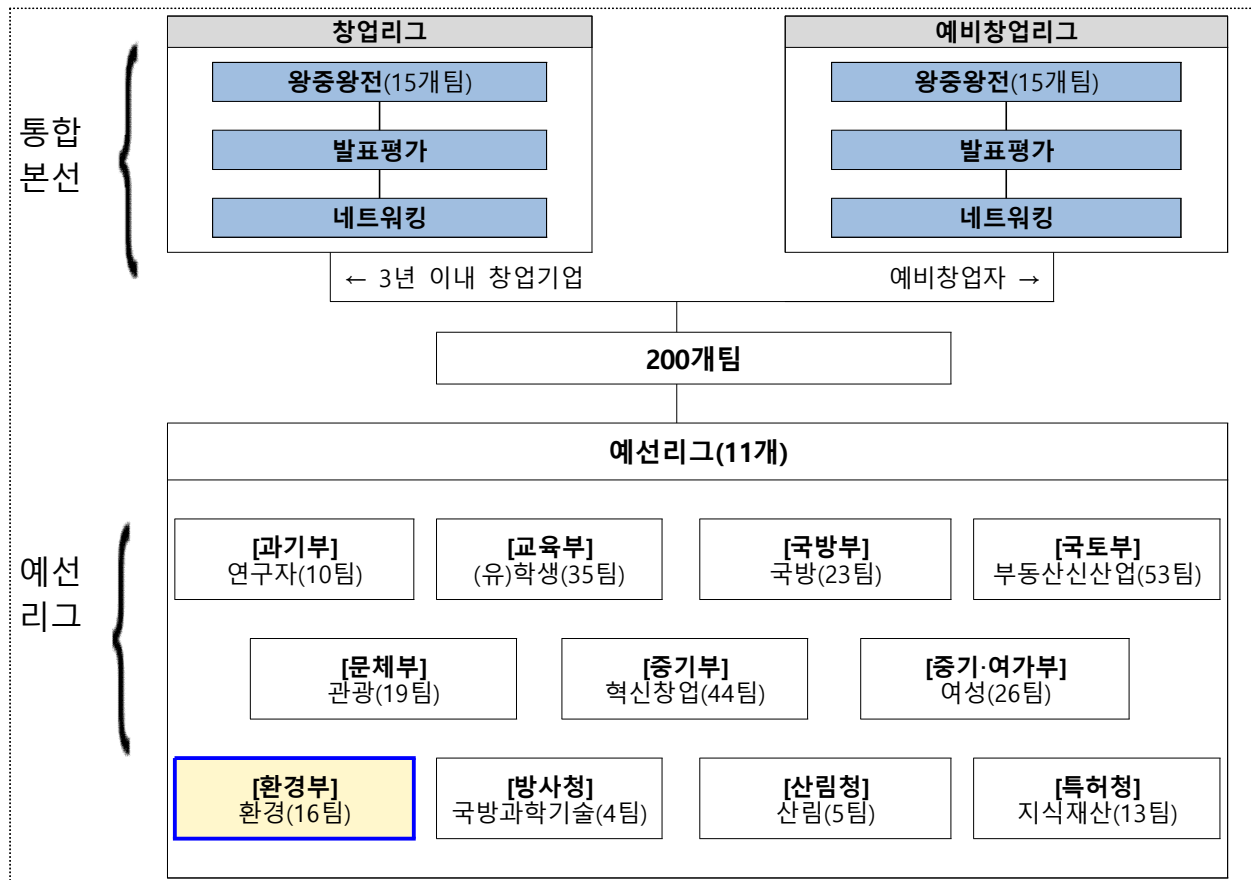
○ (시상·훈격) 25개 팀, 총상금 108백만원

구 분	훈격	아이디어 (12)	스타기업 (13)	비 고
대 상	환경부 장관	1,000만원 (1)	2,000만원 (1)	최종경연 대상팀
최우수상		700만원 (1)	1,000만원 (1)	
우수상	기술원장	각 500만원 (2)	각 700만원 (2)	
장려상	기술원장	각 200만원 (2)	각 500만원 (3)	-
입 선		각 100만원 (6)	각 200만원 (6)	

□ 연계지원

○ (부처연계) 부처 통합창업리그(도전! K-스타트업, 중기부) 참가 지원(16팀)

※ 21-22 왕중왕전 실적이 우수한 환경부 참가 TO 확대(^{22년} 15개 → ^{23년} 16개)



○ (내부연계) 사업화 지원사업(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 시 서류평가 면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사무공간(환경벤처센터) 입주 시 가점 부여

□ 발표경연 과제(8)

분야	회사/팀명 (대표자명)	아이디어명 (제품명)	아이디어 개요
아이디어 부문	그리닉 (송동욱)	파쇄지 업-사이클링을 통한 생분해성 버섯 균사체 품	매립, 소각 되는 파쇄지와 스티로폼, 플라스틱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하기 위해 배양지 3차원 다공성 구조체 형성기술과 자체적인 대량 배양, 3-STEP 제조공정을 통한 균사체 품 소재 제품 생산
	에브리심 (이석근)	전산유체역학(CFD) 기반 실내 공기질 개선 시뮬레이터 에브리에어(EveryAir)	전산유체역학(CFD)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물 시스템의 최적화된 환기 및 공기 청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실내 공기질 개선
	에코마린 (박덕훈)	친환경 및 고내구성의 재활용 가능한 차세대 선박용 소재	재활용이 가능한 선박용 HDPE 소재를 만들고, 이를 사용한 친환경 HDPE 선박을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 해결
	최희균	전기차를 위한 비배기가스 집진장치	차량 주행시 휠 수용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세먼지를 포집하여 도로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비배기가스 집진장치
스타 기업 부문	(주)리텍 (이상혁, 이재영)	2차전지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한 철강 원료화 사업	2차전지 재활용 공정의 공정 폐기물을 철강(스테인리스)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니켈농축 및 불순물 제거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음극재 폐기물은 금속을 환원할 수 있는 금속 환원제로 사용
	메쉬 (김대근)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버려지는 파쇄지를 재활용한 마감재 입체 타일 개발	파쇄지를 펄프화 작업 후 첨가제를 섞어 페이스트 형태로 만든 뒤 다이캐스팅 성형 방식을 응용하여 입체 성형을 하게 되며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
	클린사이언스 (박순복)	Air증폭 기술 기반 회전롤 표면 분진제거장치	코안다 원리 적용 11배의 강한 흡입력으로 회전롤 표면에 잔류하는 분진, 고형분, 고착Dust 오염물질을 남김 없이 제거하는 청정화 장치
	(주)푸른 하늘 (장동민)	PET 원터치 제거식 용기 포장지	PET 용기 원터치 제거식 라벨지는 Cap 회전시 라벨지가 동시 분리되며 PET 용기에 접착제가 남지 않아 100% 재활용 가능한 제품

※ 회사/팀명은 가나다 순

IV.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 대응

1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8.28.~9.1.)’ 개최

-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공동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했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어 기후적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이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응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적응의 새로운 시대 : 적응의 확대와 변혁(A New Era for Adaptation : Scaling Up and Transformation in Adaptation)’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 *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지난 7월 16일 섭씨 54도 기록), 인도(한 달 넘게 폭우가 계속되어 100여 명 이상 사망)
 - 세부 행사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주관의 아·태 국가 적응계획(NAP)* 국제 포럼 및 적응비전 토론회(포럼), △유엔환경계획 주관의 아·태 적응네트워크(APAN)**포럼 등이 진행되었고, 고위급 대화에는 마지드 알 수와이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사무총장, 각국의 장관급 이상 각료 등이 참석하여 적응확대와 변혁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 (NAP) National Adaptation Plan : 국가 적응계획
 - ** (APAN) Asia Pacific Adaptation Network : 아·태 적응 네트워크
- 환경부는 이번 적응주간에서의 논의 결과를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2023년 11월) 될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공유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의제 진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 추진 배경

- UNFCCC가 각국의 적응계획 수립·이행을 촉구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포럼으로, 적응 관련 구체적 논의 주도를 위해 적응주간 행사 유치
- ※ '11년부터 격년으로 개최 중인 UNEP(기후환경회의) 주관 APAN^{아태} 적응 네트워크 포럼도 적응주간 행사와 연계, 시너지 제고 및 홍보 효과 극대화

□ 주요 내용

- (일시/장소) '23.8.28(월)~9.1(금) 5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
- ※ ①(8.28) 개회식(환경부차관 참석, 인천시장 환영사 등), ②(8.30) UNEP 주관 포럼 개회식, 고위급 대화(환경부장관 참석, COP28 사무총장 겸 특별대표 기조연설), ③(9.1) 폐회식(결과 공유)
- (주제) 적응*의 새로운 시대 : 적응의 확대와 변혁(A New Era for Adaptation : Scaling Up and Transformation in Adaptation)
- *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모든 활동
- (주요인사) ①개도국 각료(몽골 환경부장관 예정), ②COP28 사무총장 겸 특별대표(예정), ③국제기구(UNEP, GCF) 사무총장 등
- * 주요인사 참여여부, 분과별 세션 주제 등 세부 행사계획은 국제기구와 8월초까지 계속 협의 중
- (세부행사) UNFCCC(총회 4회, 분과세션 20회)·UNEP(총회 4회, 분과세션 20회) 포럼, 고위급 대화(장관급 이상) 등 진행
- ⇒ 고위급 대화 결과와 적응주간 결과를 종합하여 COP28에 공유, 적응 의제 진전에 활용 추진
- (부대행사) 지자체 기후적응 선언식, 기업 적응 기술 전시 등
 - (선언식) 지방정부의 기후적응 노력 의지 표명
 - (전시) 적응 공공·민간 부문 전시 부스* 운영(약 30개)
 - * 과학원,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기술원, 국제기구, 민간기업 기술 등
- (국내 행사) 탄소중립 서포터즈(청년), 지자체 기본계획(지역), 적응 협의체(산업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국내 탄소중립 회의 병행 운영

- 환경부는 8월 30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을 개최했다.
- 최근 들어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집중호우,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위기 피해는 적응역량, 사회기반시설 수준 등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역에 맞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적기에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번 선언식은 기후위기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를 모으고, 지역 중심의 적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의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의 실천 의지를 최초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번 기후위기 적응 선언에는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장(광역 17곳, 기초 217곳)이 동참했다.
 - 참여한 지방정부는 실천 선언문 낭독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 정책 우선 추진 및 이행체계 구축,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모색, △시민참여 등 기후위기 적응 사회 구축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 이어서 용인(경기), 김해(경남), 광명(경기), 당진(충남) 등 4개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 * △(용인)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방문 간호 서비스와 집중호우 긴급대응체계
 - △(김해) 우수지로 빗물을 모아 유량 조절하는 투수 블록으로 홍수 예방, 식생체류지 등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 시설을 설치△(광명) 도입 내 정원조성 사업 △(당진) 탄소흡수 해조류로 바다숲조성, 탄소흡수량 수목식재로 탄소감축 및 열섬현상 해소
- 환경부는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적응 우수사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구분	지방자치단체
서울(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17)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9)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군위군
인천(1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6)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6)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6)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1)	세종특별자치시
경기(32)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강원(1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〇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11)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5)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전북(15)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23)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23)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15)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1)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공동 실천 선언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재난과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가 선언에 참여하여,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해야 하는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후적응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적응 정책을 우선하여 추구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체계와 지역 기반을 구축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적응 사회로의 전환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사회에 불평등하게 나타남을 인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하나.

우리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간 공동 사업 발굴 및 정보 교류를 확대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실효성 있는 기후적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적응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적응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2023년 8월 30일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동

작 성 자

■ 투자종합상담실 환경부 파견관 양근미

KOTRA자료 23-085

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동향 2023년 3분기

발 행 인		유 정 열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3년 1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종합상담실 (02-3497-1738)
I S S N		2983-2144



Copyright © 202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